

[별지 제14호서식(제33조제3항)]

## 국유재산 대부계약서

재산의 표시

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\_\_\_\_\_ 로 한다.

제 2 조 대부기간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부터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까지( \_\_\_\_\_ 간)으로 한다.

제 3 조 대부료는 연액(월액 또는 일액) \_\_\_\_\_ 원정으로 한다. 다만, 토지의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 26 조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.

제 4 조 <일시납부의 경우>을은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 41 조제 3 항에서 준용하는 제 4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.

<분할납부의 경우> 을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 41 조제 3 항에서 준용하는 제 4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.

회 수	분납금	이 자	납부기일	회 수	분납금	이 자	납부기일

제 5 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, 통

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,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,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.

**제 6 조**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갑이 부보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 7 조**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대부목적의 변경
2. 대부재산의 원상변경
3.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의 양도

**제 8 조**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
2.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
3.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
4. 을이 채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
5. 기타 을이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

② 제 1 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1 호의 경우에는 을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을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 9 조** 제 8 조제 2 항 단서의 배상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배상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**제 10 조** 이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 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, 해약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납금을 반환한다. 이 경우에

